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-67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- (당초) 2023년 12월 31일까지 → (변경) 2028년 12월 31일까지

나. 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4조제4호)

- (당초) 대불금 상환금 → (변경) 대지급금 상환금

다. 특별회계 세출기준 명확화(안 제5조제1호)

- (당초)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

→ (변경)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의료급여법」 시행규칙 제28조(기금의 관리 운용)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4. 25. ~ 5. 15.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 : 원안의결(2023.05.16.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대불금”은 “대지급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금”을 “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# 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생활보장과 강현석 |
| 연 락 처  | 02-3153-6484    |